
2025년 연인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2025. 7.

인천광역시중구
법무감사실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중구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5. 3. 5.(수) ~ 3. 11.(화) (5일간)
- 감사범위 : 2022. 4월 ~ 2025. 2월 추진업무 전반
- 감사반 : 4명
- 중점감사 사항
 - 예산·회계 관련 법규 준수 및 집행실태 적정 여부
 - 통·반장 관리, 위원회 운영(회의 참석수당 지급 등), 기록물 관리 적정 여부 등
 -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 관련 법규 준수 및 운영 적정 여부
 - 사회복지·주민등록 등 민원사무 처리 실태
 - 민방위 관련 업무처리 실태
 - 직원 복무, 급여·수당 지급 적정 여부
 - 이전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등

2. 감사결과

○ 지적사항 총괄

행정상(건)				재정상(건/천원)					신분상 (건/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추징	회수	추급	환급	
21	10	11	-	36/1,955	20/1,671	2/153	3/81	11/50	1/2

※ 주의·시정 중복으로 인해 건수 불일치

[일련번호 : 1]

인천광역시 중구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통·반장 관리 업무 처리 소홀

[기 관 명]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연안동” 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홍보와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에 하부조직인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두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반장의 위·해촉 또는 임명·해임(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통·반장의 위촉 등) 제2항에는 동장은 통·반장을 위촉 또는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5.4.6.>

*제2조(통·반장의 임명 등) 제5항에 따르면 동장은 통·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반장 등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2.12.28. 개정>

같은 시행규칙 제3조(통장증) 제4항에 따르면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발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 따르면 동장은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장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회수·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장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 미접수

- [표 1]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 미접수 현황 : 생략

연안동에서는 [표 1]과 같이 분실 재발급 대상자의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접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통장 관련 대장 작성 소홀

- [표 2] 대장 미작성 및 관리 소홀 현황 : 생략

연안동에서는 [표 2]와 같이 통·반장 등록부(별지 제3호서식) 및 통장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작성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연안동장은

【 시 정 】

-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반장 등록부 및 통장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 의 】

-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반장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인천광역시 중구

시 정 요 구

[제 목] 통장 월정수당 지급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연안동” 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홍보와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에 하부조직인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두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반장의 위·해촉 또는 임명·해임(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제14조(실비변상) 제1항에 따르면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실비변상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장의 월정수당은 *위촉 또는 위촉해제일을 기준으로 월정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5.4.6.>

*임명 또는 해임일을 기준으로 월정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2.12.28. 개정>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통장 월정수당 일 단위(일할) 계산 착오지급 현황 : 생략

연안동에서는 [표 1]과 같이 통장 임기에 따른 월정수당 일 단위(일할) 계산 착오에 따라 통장 월정수당 과·미지급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연안동장은

【 시 정 】

-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라 통장 월정수당 과지급분 1건/137,930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시고, 미지급분 1건/1,940원을 추가지급 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통장 월정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인천광역시 중구

시 정 요 구

[제 목] 통장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연안동” 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홍보와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에 하부조직인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두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반장에게 편의제공 및 혜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제13조(편의제공 및 혜택) 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량강화를 위한 소양교육 또는 워크숍 개최, 통·반장 체육대회 지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지급,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수수료의 면제)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9조(수수료의 면제 대상자) 제1호에 따라 통·반장에게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10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등) 제3항에 따라 동장은 종량제 봉투를 그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대장에 따라 수불상황을 기록·관리

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무료 지급분 종량제봉투를 배부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연안동에서는 감사대상기간 (2022.4월 ~ 2025.2월) 중 통·반장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는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종량제봉투의 구입내역·지급내역·잔량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는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연안동장은

【 시 정 】

-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 대장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를 철저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민방위교육 면제·유예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연안동” 이라 한다)는 「민방위기본법」 및 민방위 교육 지침 등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민방위 업무 지침」 제2장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르면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 신청이 원칙이며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읍·면·동장은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민방위교육 면제·유예자 현황 : 생략

연안동에서는 [표 1]과 1같이 민방위교육 면제·유예대상자의 교육 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면제 신청 접수를 받고 결재권자(동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연번 8~11번의 대상자는 교육 면제 대상임에도 유예 대상으로 부적정하게 결정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연안동장은

【 주 의 】

-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라 민방위교육 면제·유예 대상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인천광역시 중구

시 정 요 구

[제 목]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등 관리 소홀

[기 관 명]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연안동” 이라 한다)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지방공무원의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반영하여 근무 상황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7(특별휴가)제9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 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¹⁾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증빙서류의 예는 아래와 같다.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가족돌봄휴가 승인시 증빙자료 미첨부 현황 : 생략

연안동에서는 [표 1]과 같이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하면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승인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1) 2024.7.29. 개정.

개정 전)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 가산하여 연간 총 3일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조치할 사항 연안동장은

【 시 정 】

- [표 1]의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증빙서류 미첨부 내역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라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가일수 공제, 연가 보상금액 환수, 무급휴가 봉급감액 중 하나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향후 가족 돌봄휴가 사용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인천광역시 중구

시 정 요 구

[제 목]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연안동” 이라 한다)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시간외 근무시에는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의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수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의 규정에 의해 근무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 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부적정 지급 현황 : 생략

그러나, 연안동에서는 [표 1]과 같이 출근 미달일수를 확인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별지 1] 개인별 근무상황 내역 : 생략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연안동장은

【 시 정 】

- [표 1]의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과지급된 1명/15,090원에 대하여 회수 후 세입처리 하시기 바라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수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정액분 지급분에 대한 지급대상 적정성을 검토 후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검진 안내 지연

[기 관 명]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연안동” 이라 한다)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의 재판정 예정자에게 재진단기한 내에 재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진 안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 상태 확인)에 따르면 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 정도(등급)재판정 통보서는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받도록 하여 자료제출 기한일 내 장애진단을 받도록 해야하며, 장애인이 재판정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정 촉구 기한내에도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검진 안내 지연일 내역 : 생략

그러나, 연안동에서는 [표 1]과 같이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에게 1차 통보서를 지연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연안동장

【 주 의 】

-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안내를 적기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재판정 지연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연안동” 이라 한다)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급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79페이지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급여관리 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읍·면·동에 시달하고 읍·면·동장은 관련 계획에 따라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사용) 실태를 반기별 또는 연 1회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서식39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서식39호는 읍·면·동 보관용 서식임

이에 중구(복지정책과)에서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별표> : 생략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연안동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22. 4월 ~ 2025. 2월) 중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관리실태 점검 시 담당자 확인 및 결재권자(동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급여관리 점검표(서식39호)를 작성하는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실태 점검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연안동장은

【 주 의 】

-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인감 대리발급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이하 “연안동” 이라 한다) 「인감증명법」,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등에 따라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전산상으로 인감증명발급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기발급대장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대리인의 발급 시 대리인의 무인날인 때문이며,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무인확인과 그 무인을 전자발급대장에 저장하는 방식은 진본성 논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고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대리로 발급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관련 부적정 현황 : 생략

그러나, 연안동에서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접수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 127건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인감증명서발급대장 기록과 무인 누락 60건,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인감 발급번호 누락 9건, 발급 일자 등 기재 오류 4건, 발급사유가 ‘해외체류 / 해외출장중’ 임에도 영사관을 통한 증빙 없이 발급 6건, 위임장에 접수인·위임일자·위임사유·위임자의 서명 및 날인·발급통수 등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위임장을 59건 수리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연안동에서는 연번 104번 발급 건에 대하여 서류 접수일은 20**. **. **.이지만 실제 발급일자는 20**. **. **.임을 소명하여, 이와 관련하여 발급대장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번 113번 발급 건에 대하여 20**. **.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 건(위임자 ***)에 대하여 발급대장에 기재하였으나, 신고인과 대리인을 바꾸어 기재한 것으로 의견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발급대장 관리 소홀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연안동장은

【 주 의 】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시 위임장에 기재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발급대장에 대리 발급자의 무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인감증명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인천광역시 중구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확인 및 수수료 부적정

[기 관 명]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연안동” 이라 한다)에서는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및 시행규칙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자연적인 결함(사진이나 글씨 등이 닳아 없어짐 등),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 등 주소 외의 기록사항이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하거나 국외로 거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 재해·재난·교통 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미용, 단순한 용모변경, 사진변경, 성형으로 인한 용모변경 등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보안 미적용증(2006.11.1. 이전 발급된 증)과 성명 변경을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면 수수료 무료이나 무분별한 증 재발급 방지를 위해 기존의 증 미반납 시에는 수수료 부과(분실에 따른 재발급으로 분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제 대상자(수급자, 국가 유공자 등)가 신청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 확인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신청자의 면제대상 여부 확인 후 면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 [표 1]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수수료 부과 부적정 현황 : 생략

연안동에서는 [표 1]과 같이 4건(연번 1, 3, 4, 36번)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부적정 처리하였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오기제한 사항이 24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서명 누락 7건으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연번 8번을 제외한 총 35건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나. 온라인(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관련 수수료 세입처리 부적정

- [표 2] 온라인(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관련 수수료 세입처리 부적정 현황 : 생략

또한, [표 2]와 같이 온라인(정부24)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민원인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수수료를 결제하여 따로 재발급 수수료를 세입 처리하지 않아야 함에도 신청서에 증지를 소인하여, 총 10건에 대하여 세외수입을 과다 처리(50,000원)한 사실이 있다.

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증지 소인 처리 부적정

- [표 3]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증지 소인 누락 현황 : 생략

[표 3]과 같이 총 40건의 증지 소인이 누락되었으며, 이 중 7건은 재발급 사유가 분실, 용모(사진)변경임에도 수입증지가 누락되어 수수료 총 35,000원의 세외수입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확인 소홀 및 세입 처리 부적정

- [표 4]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현황 : 생략

[표 4]와 같이 증지 당일 소인 및 세입 누락 31건, 접수인 누락 3건, 신청서 서명 또는 인 누락 2건, 수수료 면제사유 미기재 및 증빙 미첨부 8건으로, 총 44건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서 확인과 세입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 [표 1]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수수료 부적정 현황

- 연안동에서 연번 2번 등 24건에 대하여 재발급 신청서상 재발급사유 오기재 사항을 소명하여 수수료 추징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재발급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업무 처리에 소홀함이 인정된다.
- 연번 8번. 지문 재등록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회수 내역을 소명하여 이를 인정하고자 한다.
- 연번 9번 등 7건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소명하여 수수료 추징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재발급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및 별도 증명 자료가 누락되어 업무 처리에 소홀함이 인정된다.

○ [표 3]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증지 소인 누락 현황

- 연안동에서 연번 1번 등 17건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자 등을 소명하였고, 이를 인정하는 바, 수수료 세입 누락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증지 소인 누락으로 업무 처리에 소홀함이 인정된다.

조치할 사항 연안동장은

【 시 정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관련 부적절하게 처리된 수수료에 대하여 적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1) 수수료 부적정

- 수수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처리에 따른 추징·세입처리(3건 / 15,000원)
-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1건 / 100원)

2) 증지 오기입

- 온라인(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과다 세입분 정산(10건 / 50,000원)

3) 증지 소인 누락

- 수입증지 누락에 따른 수입증지 발급 및 세외수입 조치(7건 / 35,000원)

【 주 의 】

○ 향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제 대상자(수급자, 국가 유공자 등)가 신청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고, 면제대상 여부 확인 후 처리하고 온라인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 시 수수료를 중복으로 세입 처리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서 확인과 세입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확인 소홀

[기 관 명]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연안동” 이라 한다)에서는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사람은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연도별 신청서 확인 소홀 현황 : 생략

연안동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접수처리 시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안내·확인하여야 하나, [표 1]과 같이 감사대상기간 동안 총 23건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연안동장은

【 주 의 】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수리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인천광역시 중구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기 관 명]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연안동” 이라 한다)에서는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에 대한 사항을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4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제4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별표4]의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하면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자에게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다른 감경사유와 함께 거듭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처리 현황 : 생략

연안동에서는 사실조사기간 내 재등록을 신청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과태료의 2분의 1 감경 및 자진납부에 따른 100분의 20 감경을 적용하여야 하나, 100분의 20의 감경만 적용하여 과태료를 과다 징수(각 40,000원)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연안동장은

【 시 정 】

○ 과다 부과된 과태료(2건 / 80,000원)에 대하여 환급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 의 】

○ 주민등록증 과태료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동일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인천광역시 중구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인증기 수입금 세외수입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연안동” 이라 한다)에서는 민원업무 처리로 인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를 인증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의 형태로 발행하여 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수입금의 납입)에 따르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하는 때에는,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할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 그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인증기 수입금에 대하여는 일일 결산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고지서에 의하여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인증기 수입금 정산서류 작성 소홀

- [표 1] 인증기 수입금 일일 정산서류 처리 현황 : 생략

그러나, 연안동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에서 규정한 [별지] 서식에 따라 인증기 수입금에 대한 일일 정산을 처리함에 있어 [표 1]과 같이 월계와 연계의 금액이 불일치하게 작성하거나, 수입을 결손에 입력하여 정산 서류상 연간 총 수입액과 세외수입 시스템상 세입액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인증기 수입금 정산서류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인증기 수입금 세입 처리 부적정

- [표 2] 인증기 수입금 세입 누락 현황 : 생략

또한, 각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자동인증기 수입과 수동인증기 수입, 카드 수입을 확인하여 현금과 카드를 각각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실제 수입금과 세입액이 다르거나 세입을 누락하는 등 인증기 수입금의 세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의견

연안동에서는 [표 2]의 연번 3번에 대하여 회계과목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으로 세입처리 했음을 소명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수입금 누락은 아니지만 세입과목의 오류로 인증기 수입금 세입 처리의 소홀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연안동장은

【 시 정 】

- 누락된 인증기용증지수입(현금) 15,700원에 대하여 세입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주 의 】

-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별지] 서식에 따른 ‘인증기 수입금 일일 정산 서류’ 를 작성함에 있어 내용의 오류가 없이 수입금과 세외수입 세입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정기하자검사 및 만료검사 소홀

[기 관 명]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연안동” 이라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70조(하자 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에 따라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하며,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계약 건에 대하여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하자만료검사 현황 : 생략

그러나, 연안동에서는 [표 1]과 같이 연번 3번 외 3건 사업에 대해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연번 1, 2번 사업에 대하여 하자검사조서·하자최종검사조서 등의 보증기간 오기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번 2, 7번 사업에 대하여 미제출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검사조서·하자최종검사조서를 추가제출하여 확인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번 8번 사업에 대하여 하자검사조서·하자최종검사조서 등의 사업명 오기에 대하여 확인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연안동장은

【 주 의 】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인천광역시 중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관련 서류 검토 소홀

[기 관 명]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연안동” 이라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16조(감독) 및 제17조(검사)에 따라 견적서·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제17조(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및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수익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르면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 . ** . ** ***** ** **」 [(△과 (2023. 1. 1.부터 적용) 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중구에서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 계약 및 협약에 대해 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및 계약 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징구 받도록 안내하였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및 착수 시 내역서 검토, 구비서류(이행보증서(각서), 수의 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등) 등의 제출을 확인하여야 하며, 준공완료 후에도 준공신고서 및 준공사진, 사후 정산 내역(4대보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등), 기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검사조서(3천만원미만 검사조서 생략가능, 감독조서 같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2백만원 이상 계약 서류 검토 미흡 현황 : 생략

그러나, 연안동에서는 [표 1]과 같이 연번 1번 외 6건 사업에 대해 착수계, 준공계 접수 시 감독 날인 등을 누락하였으며, 연번 8번 사업에 대해 내역서상 요율 등의 검토가 미흡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연안동장은

【 주 의 】

- 「지방계약법」 및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 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 설계서 검토 및 첨부 내역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인천광역시 중구

시 정 요 구

[제 목] 지역개발채권 및 수입인지 부과 업무 소홀

[기 관 명]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연안동” 이라 한다)에서는 「인지세법」 및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건에 대하여 업체로부터 인지세 납부와 지역개발채권 매입 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과세문서	세 액
1~2. 이하 생략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이하 생략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12. 이하 생략	이하 생략

또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의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제2항 관련)

매입대상	매입기준	비고
1~3. 이하 생략	-	
4.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	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개정 전 2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조례 제6989호, 2023. 2. 20., 일부개정] (2023.3.1.부터 시행)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1]에 따라 2023. 2. 20. 개정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 3. 1. 시행)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이 상향되어 2023. 3. 1.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이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대가지급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기준이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인지세 및 지역개발채권 미매입 현황 : 생략

그러나, 연안동에서는 [표 1]과 같이 연번 1번 외 5건 사업의 지역개발채권을 미매입 (1,546,000원) 하였으며, 연번 5, 7번 사업의 수입인지(인지세 60,000원) 납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연안동장은

【 시 정 】

- 매매입한 수입인지 2건/60,000원 및 지역개발채권 6건/1,546,000원은 추정하여 차세대지방재정에 사후증빙(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사 등의 계약 시 「인지세법」,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매입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인천광역시 중구

시 정 요 구

[제 목] 비품관리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연안동” 이라 한다)에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일반수용비로는 소모품을 구입해야 하는 반면, 자산취득비로는 내구성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내구성 물품은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소모품은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는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II.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2. 관리대상 물품에 의하면 소모품의 종류는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단,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4-30호)의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어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한다.

또한, 비소모품은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등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수불상황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이라도 조달청 고시에 따라 내용연수표 상의 품목을 확인하여 물품 현황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표 1] 물품 미등록 현황 : 생략

그러나, 연안동에서는 [표 1]과 같이 “초음파 가습기”(가습기, 내용연수 7년), “바벨바”(바벨, 내용연수 12년), “전기밥솥”(전기밥솥, 내용연수 7년), “진공청소기”(진공청소기, 내용연수 7년), “전동드릴”(전동드릴, 내용연수 11년), “코팅기”(코팅기, 내용연수 10년)에 대해서는 50만원 미만의 소액의 물품이지만 조달청이 고시한 내용연수표 상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물품임에도 물품 현황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연안동장은

【 시 정 】

- “초음파 가습기”, “바벨바”,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전동드릴”, “코팅기”에 대하여 물품 현황에 등록·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물품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